

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

계약업무, 이렇게 바뀌었습니다!

1 계약서류 전자화 및 간소화

- 계약 편의성 증진과 페이퍼리스(Paperless)를 위해 계약서류 전자화
 - 입찰은 '문서24', 계약은 '나라장터'를 통해 전자화하여 종이없는 계약 추진
 - 계약상대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서류 간소화
 - 계약 체결시 표준계약서의 직인으로 각 계약서류별 직·간인 대체
- * 직·간인 계약서류 : (기존) 11부 → (개선) 2부



2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 인지세 공동부담

- 계약상대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자 인지세 공동 부담
 - 전자계약 체결시 우리원이 전자 인지세의 100분의 50을 분담하여 납부
- * 단, 여성기업,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, 장애인기업,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전자 인지세는 우리원이 전액 부담



3 계약상대자의 자금 유동성 확대

- 자금 유동성 확대 및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특례 등의 제도개선 실시
 - 우리원 계약업무 특례에 따라 '23.06.30.까지 청구되는 선금 지급한도 상향
- * (기존) 100분의 70 → (개선) 100분의 80
- 하도급·협력업체 등의 대금(선금 및 잔금) 지급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
- * 우리원 약정 은행 : 기업은행(IBK상생결제론), 하나은행(하나동반성장론)



4 기술 및 경영상의 비밀정보 보호

- 중소기업 등의 기술 침해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비밀정보의 법적 권리 확보
 - 모든 용역사업의 계약 체결시 비밀유지협약서(NDA) 작성 및 제출 의무화
 - 기술자료 등을 제3의 임치기관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(필요시)
- * 임치기관 : 기술보증기금,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


5 공급원가(재료비, 노무비, 경비) 인상분 반영

- 계약상대자의 수익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원 예산 범위 내에서 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가능
 - 아래 신청조건 해당시 공급원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변경 가능
- * 입찰일 기준으로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
- * 특정 재료비의 가격이 10% 이상 변동
- * 당해연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 변동
- * 공급원가(재료비, 노무비, 경비)가 잔여 계약금액의 3% 이상 변동



6 부당행위 근절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

-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환경 조성
 - 용역사업 제안서 평가시 준법·청렴 옴부즈만 배석 및 이해관계자 제척
 - 우리원 퇴직자, 사적 이해관계자(국토부, 국토위) 등과의 입찰 및 수의계약 제한
 - 계약업무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익명신고시스템(안심번호) 도입 및 운영
- * 청탁금지법 위반, 갑질·인권침해, 부당지시 등 24시간 익명신고 가능

